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한상문의원의 21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1996년 6월 18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20일

3. 주 문

-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 주민투표 실시결과를 존중한 행정구역 개편
-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동시 조기 확정

4. 제안이유

- 주민불편 해소
- 행정수행의 효율성, 합리성 확보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이기주의 해소

5. 검토의견

본 행정구역조정촉구 건의를 발의하게 된 동기 또는 타당성으로는,

생활권 및 행정구역 불일치에서 오는 경제활동 및 행정기관 이용등의 불편을 초래해 오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 사항에 대해 본 건의를 통하여 조속히 행정구역이 조정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서,

이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집행기관은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95년도 11월중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도 있었던 바,

이에 진천군 도장리 주민들의 투표결과로는 18세대중 진세대가 참여하여 17세대인 94.4%의 찬성을 얻은 바 있었고,

음성군 대풍리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도 67세대중 55세대가 참여하여, 54세대인 98.2% 찬성투표 결과를 보인 상황으로서, 이에 관련하여 행정구역조정은 주민 의사에 따라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진천군과 음성군간의 견해 차이에 입각하여 지난 제125회 임시회중 진천지역의 경계조정건만이 단독적으로 제출되는등 양기관간의 협력적 차원을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기피 현상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이의 추진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서의 지도감독 및 분쟁조정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당초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하는 행정구역조정
에 따른 추진의지 또는 방향으로 볼때 해당지역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해결 해 줌이 합당한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보며,

본 촉구 건의 안의 발의는 현안문제의 해결 측면과 고질화된 주민생활
불편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 해 나가하고자하는 촉구건의 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침 부

- 행정구역조정 촉구 건의 (안)